

이 책은
무염소 표백펄프 종이로 인쇄한
친환경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안전가이드

참고

국립축산과학원. (2024. 9. 27.). 반려동물. <https://www.nias.go.kr>

김옥진. (2014. 11. 22.). [김옥진의 동물매개치료②] 동물매개치료를란 무엇인가?

데일리벳. (2024. 11. 22.). [김옥진의 동물매개치료②] 동물매개치료를란 무엇인가? <https://www.dailyvet.co.kr/news/34600>

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정보. (2024). 반려동물행동지도사 (2024. 9. 30. 방문) <https://lea-lion.com/>

법제처. (2023). 동물보호법,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발행일 2024년 10월

발행인 최원기

작성자 김신아, 김미정 (전략기획실)

발행처 성남시청소년재단

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

전 화 1577-8088





반려동물¹⁾

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존중해서 사용하는 명칭. 애완동물이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,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미

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안전가이드

1) 본 가이드에서는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로 통일하여 사용함.

03 관련법

동물보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,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동물보호의 기본원칙)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
2.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
4. 동물이 고통·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
5.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제10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

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2.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3.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
4. 그 밖에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
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도구·약물 등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. 다만,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3.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4.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나.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·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다.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라. 동물의 사육·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제22조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
7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8.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

01 목 적

본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매개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과 동물 복지를 보장하고, 재단의 반려동물 매개 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 것임

02 이용 대상

반려동물을 매개로 청소년과 청년 활동, 보호·복지,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



04 용어 정의

✓ 동물매개활동 (AAI: Animal Assisted Interactions)

동물매개활동 인증과정을 통과한 동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
동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상호반응을 얻는 활동



✓ 동물매개치료 (AAT: Animal Assisted therapy)

동물매개심리상담사와 이루어지는 치료 목표 전문 프로그램
대상자의 치료효과를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된
치료 프로그램

✓ 동물매개교육 (AAE: Animal Assisted Education)

동물매개심리상담사와 이루어지는 교육 목표 전문 프로그램

✓ 동물매개전문가 (Animal-Assisted Intervention Specialist)

동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치료, 교육,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로,
주로 동물매개심리상담사, 반려동물행동지도사,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의
자격을 보유한 자

✓ 치료도우미 동물

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의 정해진 기준에 따른 선발, 훈련, 위생, 동물복지
기준을 충족하는 개, 고양이, 조류 등의 동물로서 평가에 합격한 인증된 동물

✓ 펫 파트너(핸들러)

반려동물의 훈련 및 교육에서 반려동물과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
발급기관에서 취득한 동물매개전문가



이름: 나리 나이: 48개월
특징: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

05 운영과정 및 점검사항

1) 운영과정



사전 준비

• 접촉 준비 • 반려동물 기초예절 교육



자격 사항

• 반려동물 자격 준수 • 프로그램 진행자 자격 준수



사업 원칙 수립

• 반려동물을 위한 윤리 지침 • 반려동물 복지 가이드라인



사업 수행

• 대상별(반려인, 비반려인, 직원 및 봉사자) 안전 수칙 점검
• 응급처치키트 구비 및 위급상황시 대처법
• 안전사고 대처 프로세스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



모니터링 및 평가

• 모니터링 및 평가 • 만족도 조사

2) 반려동물 접촉 전 자가 진단표



연번	점검사항	체크란	
1	활동 전 반려동물의 건강, 스트레스 상태 점검	예 ☐	아니요 ☐
2	반려동물의 성향과 행동 패턴 파악	예 ☐	아니요 ☐
3	충분한 식수와 사료 준비	예 ☐	아니요 ☐
4	참여자과 반려동물 간 안전한 환경 마련 (안전한 공간, 적절한 보호장비 준비)	예 ☐	아니요 ☐
5	알레르기나 건강 문제가 있는 참여자 확인 여부	예 ☐	아니요 ☐
6	미성년자 참여시 보호자 동의 필수 여부	예 ☐	아니요 ☐
7	참여자 대상 반려동물 기초예절 교육 마련 여부	예 ☐	아니요 ☐
8	반려동물 이동 시 이동장을 이용하거나 짧은 목줄로 통제 여부	예 ☐	아니요 ☐

* 각 조건의 점검사항은 시작전 모든 조건 '예' 상태 필수 조건사항임

06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매개 프로그램 진행자 자격사항

1) 반려동물 자격

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려동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

• 치료도우미동물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:

수의학적 평가, 사회성 평가, 적합성 평가, 공격성 평가를 통과한 동물

• 동물매개전문가와 동행하는 동물:

자격증이 없지만 안전성이 확보된 도우미 동물

반려동물의 일반적 조건

성숙한 연령	• 동물의 연령이 어리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조그만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음 • 개의 경우 최소 1살 이상의 연령이 반려동물로 적합함 • 낮은 공간에서의 적응력이 좋아야 함 • 배변 훈련이 되어있어야 함
공격성이 없어야 함	•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함 • 다른 동물과 쉽게 친해지며,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어야 함
기초적인 복종이 되어야 함	• 기초 복종 훈련을 통한 기본적인 복종이 가능해야 함 • 다른 사람에 대해 경계하지 않으며, 다른 사람의 접촉에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함 • 과도한 짖기 행동이 없으며, 보호자 통제에 따라야 함 • 기본적인 명령어를 수행해야 함
수의학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함	• 동물로부터 오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충, 예방접종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수의학적 관리를 받은 동물이어야 함

2) 반려동물매개 프로그램 진행자 자격

프로그램 진행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함

- 동물매개 심리 및 행동교정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
- 기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(동물매개치료, 심리상담, 또는 행동 교정 분야) 이외 동물행동학 및 복지 관련 학위 또는 교육 이수자

07 반려동물을 위한 윤리 지침

활동에 포함된 도우미 동물이 원하지 않는 것, 따라 하기 힘든 일들이 강요된 것은 없는지 고려

①	도우미동물로 이용되는 모든 반려동물은 학대, 불편, 질병으로부터 신체적, 정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
②	동물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항상 제공되어야 함
③	도우미동물은 활동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함
④	대상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도우미동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물의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
⑤	도우미동물의 학대 또는 심한 스트레스 상황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됨
⑥	활동에 포함된 도우미 동물들이 원하지 않는 것, 따라 하기 힘든 일들이 강요된 것은 없는지 고려

08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

반려동물의 복지 상태 고려, 반려동물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보장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

동물의 신체적 안전 보호	• 적절한 휴식 시간과 근무시간 준수(활동시간은 45분 전후가 가장 적합, 처음에는 20분 정도에서 점차 늘려감) • 정해진 시간에 물, 사료 및 간식 제공
스트레스 관리	• 동물이 불안하거나 피로해 보일 때 즉시 휴식 시간 부여 • 동물의 행동을 실무자가 꾸준히 모니터링 • 스트레스 징후 인식(예, 구토 또는 설사, 과도한 짖음, 침흘림 등)
환경 관리	• 배변 및 적절한 휴식 공간 제공 •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(활동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) 확보 필수 • 필요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옮기거나 보호하기 위한 케이지 또는 이동장 준비 • 프로그램 환경의 안전성과 편안함을 확인(소음 수준, 온도 등 관리)

09 대상별 안전 수칙

반려인

	인식표	반려동물 인식표 착용 필수: 보호자 연락처, 반려동물 이름, 동물등록번호
	출입제한	- 동물보호법 제2조 기준 5대 맹견(핏불테리어, 도사, 로트와일러, 아메리카 스타퍼드셔테리어, 스테퍼드셔불테리어)과 그 잡종²⁾의 개 출입금지 -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염성 질병 또는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 행사장 출입 금지 조치
	리드줄과 입마개 관리	- 동물보호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조치에 따라, 행사장 및 관련 공간 내 2미터 이하 목줄(리드줄) 필수 - 동물보호법 21조에 따라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* 5대 맹견이 아니더라도 물림사고, 공격성 등 필요로 하는 상황에는 입마개 착용 권장
	배설물 처리	- 보호자는 행사장 내 배변 활동을 주의 깊게 확인하며, 배변 시 보호자가 직접 처리 - 마킹이나 소변은 엘리베이터, 계단과 같이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이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은 닦기
	동반 및 관리	- 반려동물은 프로그램 중 항상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하며, 보호자는 동물의 행동에 지속해서 주의 - 서로에게 낯선 반려견은 인사하지 않기(개물림 사고 주의) *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보호자는 형법 제266조(과실치상) 또는 제267조(과실치사) 등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게 됨 * 동물보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,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
	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	-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 - 타인 또는 다른 개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시 '1회:경고', '2회:즉시' 퇴장 조치

2) 지정된 5대 맹견과 다른 품종이 교배되어 태어난 개



로트와일러



도사견



스테퍼드셔
불테리어



아메리칸
스테퍼드셔 테리어



아메리칸
핏불 테리어

비반려인³⁾

반려동물 접촉	-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는 주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기 - 천천히 다가가기 - 강제로 안거나 만지지 않기 - 개를 앞질러 뛰지 않기	
간식제공 금지	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주인의 동의 없이 간식을 주어서는 안됨	
접근시 주의사항	-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됨 - 타인의 반려견 눈을 뵈는 응시하는 것은 공격 신호로 받아들이는 반려견도 있으니 지나친 눈 맞춤을 주의 -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- 위험 상황 시, 몸을 웅크리고 팔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며 최대한 움직이지 않음	
예의 준수	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야 함	

3) 별첨의 반려동물 기초예절교육 참고



직원 및 봉사자

- 참여자의 심리적 공포나 알레르기 등의 위험성 확인
- 반려동물 관련 사전 안전교육(반려동물 기초 예절 교육) 진행 및 안전 수칙 숙지
- 반려동물 행사 중 담당 구역 지정 및 수시 점검 실시
- 안전 수칙 미준수 반려인/비반려인 주의 또는 안전 수칙 재안내
- 긴급상황 발생 시 행사장 내 전문가 도움 요청 및 피해 상황 119 신고
- 반려동물 행사 중 반려동물 관련 안전 수칙 1시간 단위로 안내방송 진행

10 안전사고 지침

1) 기본 안전 장비

손 소독제: 활동 후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함

리드줄 및 하네스: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어하고,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함

입마개: 반려동물이 예기치 않게 사람을 물거나 공격할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

손 보호 장갑: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 시 긁힘이나 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

케이지 또는 이동장: 필요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옮기거나 보호하기 위함



베이비 꽃순이

꽃순이 동생들
나이: 14일
특징: 무적의 귀여움



2) 재난상황 발생 시⁴⁾ 반려동물 대처법

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동물 행동 주의 사항

- 재난 상황에서는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함
- 반려동물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, 두려움에 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,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즉시 안거나 이동장으로 옮겨 안전한 장소로 대피

반려동물 이동 시 주의 사항

- 대피 과정 중에는 절대로 반려동물을 혼자 두거나 이동장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하며, 기둥이나 물체에 묶어 두는 행동 금지
- 대형견의 경우, 반려동물이 공포로 인해 도망가지 않도록 리드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

대피 장소 도착 후 조치

-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반려동물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, 필요 시 물을 제공하거나 안정된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최소화
- 가능한 반려동물을 대피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격리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

4) 자연재해(지진, 태풍, 홍수 등), 건물 내 화재, 독성물질 누출 등

3) 반려동물 매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

01. 도우미 동물이 대상자들 간에 **경쟁의 대상**이 될 때
02. 참여대상자 중 특정 **도우미 동물에 대한 소유욕**이 지나치게 강할 때
03. 부적절한 핸들링 또는 관리 부주의로 **도우미 동물의 상해 위험**이 있을 때
04. 무의식적으로 **도우미 동물을 자극하고 성나게 하는 참여 대상자**가 포함되어 있을 때
05. 동물에 대한 **알레르기 반응**이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
06. 개방성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
07. 동물에 대한 **두려움**을 가진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
08. 동물 학대 **경력**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
09.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있어 **도우미 동물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부정적 견해**를 가지고 있을 때
10. 사고나 상해에 대한 **법적 규제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**
11. 기본적인 동물 복지가 **보장되지 않을 때**
12. 도우미 동물이 활동을 **즐거워하지 않을 때**
13. 도우미 동물이 **인수공통감염병**을 가지고 있을 때
14. 동물이 **공격적인 행동**을 보일 때
15. 참여자가 **동물 알레르기나 불안증**을 호소할 때
16. 반려동물의 건강, 참여자의 알레르기 반응, 물림 사고 등 **다양한 응급상황** 시



2)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법



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세스



별첨

반려동물 기초예절 교육

머리 위로 손 올리지 않기	• 개의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행동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, 대신 손을 내밀어 개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한다.
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기	• 개와 직접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은 개에게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.
큰소리 내지 않기	•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개를 놀라게 할 수 있다.
갑자기 다가가지 않기	• 개에게 갑자기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하는 행동은 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.
강제로 안거나 만지지 않기	• 개를 강제로 안아 올리거나 만지는 행동은 개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,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다.
낮선 간식 주지 않기	• 간식에 대한 민감성, 알레르기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, 반려동물의 보호자 동의 없이 낮선 간식을 주어서는 안된다.
천천히 다가가기	• 개를 만날 때는 갑자기 정면으로 다가가지 말고,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살짝 옆으로 다가간다. •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게 보여야 한다.
손을 내밀어 킁킁거리게 하기	• 개에게 인사할 때는 눈높이에 맞춰 앉거나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등을 내밀어 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. 이것은 개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.
부드러운 목소리 사용하기	• 개에게 말을 걸 때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안심시킨다.
부드럽게 쓰다듬기	• 개의 반응을 살피며,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면 손등으로 부드럽게 머리나 등을 가볍게 쓰다듬는다.